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및 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지만, 자영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불과함. 따라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 도입과 긴급사업자금 필요시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됨. 또한 자영업자의 투자지식 미흡 등을 감안해 투자교육 중심으로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요약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¹⁾에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허용됨

- 공·사연금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46.8%에 이른 반면, 공·사연금 어느 한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9.3%에 이르고 있어 자영업자중심으로 연금사각지대가 형성됨(〈표 1〉 참조)

〈표 1〉 자영업자의 공·사연금 가입 현황(기구 기준)

(단위: %)

유형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공·사연금 모두 가입	46.8	5.4
공적연금만	47.4	43.9
사적연금만	1.4	1.3
공·사연금 모두 미가입	4.4	49.3
전체	100.0	100.0

주: 1)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가입한 경우임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중 하나라도 가입한 경우는 사적연금 가입으로 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조사 10차 자료, 보험연구원(2016) 등에 기초 작성

1) 본고에서의 자영업자는 중소득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를 의미함

-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범위를 자영업자로 대폭 확대함

■ 자영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²⁾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소득층의 가입의향이 47.9%로 가장 높은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입의향은 각각 26.8%, 24.1%로 나타남
 - 중소득층은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의향이 높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고소득층은 가입하지 않고서도 노후대비가 가능해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보다 유도하기 위해 외국사례 등을 기초로 근로자와 차별화된 퇴직연금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표 3〉 참조)
 - 현재 자영업자의 직업적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설계

〈표 2〉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의향

구분	가입의향(%)	
전체	36.1	
소득 수준	저소득	24.1
	중소득	47.9
	고소득	26.8

주: 저소득(200만 원 이하), 중소득(201~400만 원 이하), 고소득(401만 원 이상)

자료: 보험연구원(2016)

〈표 3〉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운영체계

구분	한국	외국
가입형태	임의가입형태	자동가입형태 전환
중도인출	일원화	이원화
투자교육	근로자 공동	자영업자 교육 업격
재정지원	미적용	적용(예: 영국)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2017) 등에 기초 작성

■ 먼저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Automatic enrollment) 도입 검토가 요구됨

- 현재와 같이 임의가입형태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퇴직연금가입이 낮게 나타나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임
 -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최근 영국 등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차원에 자동가입형태로 전환함³⁾

2) 보험연구원이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1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3) 칠레는 2015년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을 의무시행하기 이전, 자영업자 종사자에 대해 탈퇴의사를 거치는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둘째, 자영업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와 차별화된 별도의 중도인출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긴급사업자금이 요구되므로 미국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⁴⁾
 - 즉, 자영업자 특수성을 고려한 중도인출요건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중도인출요건 이원화) 등이 요구됨

■ 셋째, 자영업자의 투자 능력 제고를 위해 투자 중심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⁵⁾ 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자영업자의 투자지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투자교육 중심으로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국내 가입자 교육 여건상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대상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한 가입자 교육 강화가 요구됨
- 또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자칫 투자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영업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방안에서는 자영업자 명의로 퇴직연금 가입 시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정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함⁶⁾
 - 따라서 자영업자가 퇴직연금 가입 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한 재정지원이 이루 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됨 **kiri**

4) 미국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SOLO 401(K)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에게 주택 구입, 교육비, 응급상황 등 발생 시 대출을 허용하여 긴급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임

5) 디폴트옵션(디폴트투자)은 가입자가 별도 상품가입 없이 자동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형태인 반면, 우리나라 대표상품은 일단 가입자가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6)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에 의하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자영업자 명의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대상에 제외됨